

인천광역시의회 공고 제2013 - 50호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경기침체에 따른 비정규직 증가로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소득격차에 따른 빈부격차와 사회양극화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
- 따라서 비정규직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 및 고용안정을 통해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비정규직근로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비정규직근로자의 보호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와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부터 안 제9조)
- 공공기관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계약해지 금지, 차별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 등 공공기관 비정규직근로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안 제15조)
- 민간부문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최저임금 준수 및 취업촉진 등 민간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안 제19조)
- 비정규직근로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12. 2(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산업전문위원실 전화 440-6233, 팩스 440-8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정규직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과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그 밖에 용역·도급 근로자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근로조건,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4. “무기계약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의회사무처의 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용안정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확대를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

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근거하여 연도별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세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비정규직근로자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사업방향에 관한 사항
2. 사업대상과 목표에 관한 사항
3. 목표의 실현을 위한 세부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5. 전년도 사업 시행에 따른 평가와 평가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 결과를 매년 1월 인천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비정규직근로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 보호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전담부서는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비정규직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

제7조(자문위원회 설치)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권리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세부계획 추진 실적 및 성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인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비정규직근로자 관련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의 의원
2. 노동단체의 대표
3. 경영 및 경제단체의 대표
4. 비정규직 관련 전문가
5. 노동문제 전문 대학교수
6. 노동문제 전문 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비정규직 근로자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부당한 계약해지 등의 금지) 시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제11조(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개선)**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근로자의 업무효율성 저하 및 근로조건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근로자가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인천광역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경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 ④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직원 채용 시 직접고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하여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차별금지)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사업,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통상근로자,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13조(고용환경 개선)** ①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실질지급 임금의 현실화와 장기 근속자를 우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후생복지와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무기

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및 처우 등에 있어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차별적 처우에 대한 고충처리) ① 시장은 공공기관 비정규직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담당부서장 등을 비정규직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충처리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노동관계 법령 준수)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비정규직근로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근로조건 향상사업) 시장은 민간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2.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지원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근로복지시설 설치 사업
4. 그 밖에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최저임금 준수노력 등) ① 시장은 민간기업체에서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
2. 최저임금 위반사항의 신속한 처리 협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 업무를 위하여 전담부서에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8조(취업촉진을 위한 노력) 시장은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비정규직근로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민간부문에 권고 등)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에 따라 기금지원을 받는 민간기업의 장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과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근로조건 개선 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인증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우수기업 선정기준, 지원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기금 설치)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체사항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 제22조(조례) ○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 고용정책 기본법 ○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제9조(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근로복지기본법 ○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조례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고용정책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전망에 관한 조사·공표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에 필요한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4. 산업·직업·지역 간 근로자 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의 확충 및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노동시장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기업경영기반의 개선,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 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고용기회를 늘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며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차별적 고용관행 등 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역 주민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등에 관한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이하 "지역고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역고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지역고용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시·도지사가 지역고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 근로복지(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 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근로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근로자가 성별, 나이,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때에는 중소기업 근로자, 기간제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수급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이 고용하

는 근로자, 저소득근로자 및 장기근속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기금·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사업주(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노동조합(지부·분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주·노동조합·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시장 및 의원 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 상 비용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경제수도추진본부 일자리정책과장 전무수